

성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'에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첨자는 공급 계약 체결 전 아래와 같이 자격여부심사를 통해 자격확인을 진행하오니 기간 내 반드시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상기 검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4.30.)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반드시 '전체포함' 및 '상세'로 발급 받기를 바라며 서류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계약 체결 구비서류로 갈음합니다.

■ 일정

대상자	구분	제출 기간	장소
정당 당첨자 예비 당첨자	자격 검증서류 제출	2021.05.26. (수) ~ 06.02. (수) (10:00 ~ 16:00)	견본주택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-5번지
	계약 체결	2021.06.04. (금) ~ 06.07. (월) (10:00 ~ 16:00)	

■ 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내용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(사본)	본인	•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, 아파트계약용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발급)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함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출입국 기록 포함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•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[☎1577-1000]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 보험증 제출 가능
	○		소득증빙서류	세대원	•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자료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발급
추가 (해당자)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• 1순위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
	○	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당사 견본주택 비치
제 3차 대리인 서류 접수 시 (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)					• 당첨자 : 인감증명서(아파트 계약 위임용 / 본인발급), 인감도장 • 대리인 : 신분증 및 인장(서명가능)

■ 소득기준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 소득, 7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이하	6,030,161원~ 7,236,192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393,648원~ 8,872,376원	7,778,023원~ 9,333,628원	8,162,400원~ 9,794,879원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 소득, 3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 ~ 140%이하	6,030,161원~ 8,442,224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393,648원~ 10,351,106원	7,778,023원~ 10,889,232원	8,162,400원~ 11,427,359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40%초과 ~ 160%이하	7,236,193원~ 9,648,256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872,377원~ 11,829,835원	9,333,628원~ 12,444,837원	9,794,880원~ 13,059,838원

- 기준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30%(상위소득)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)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 - 상위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426,843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: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등 관련 법령에 따름.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■ 소득증빙 제출 서류 안내 - 2021.04.30. 이후 발급분만 가능

해당지역	내용 및 유의사항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"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"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/세무서
	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 ②,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	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서에 사업의 직인날인 필수	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 등본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미 발급되지 않은 자	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	세무서
	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본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해당직장 /세무서 ②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에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)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비사업자 확인각서	접수장소 비치	

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